

건설재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감소방안

박 재 영 우리 협회 이사
한진건설 전무이사

1. 서 론

최근 SOC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증가 및 대규모택지개발, 공사규모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에 따라 재해의 양상도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96년 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건설업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의 28%(19,785명)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수는 전체사망자의 30%(789명)에 이른다. 전체 산업재해자 79,790명 중 건설업 재해자수가 19,762명으로 27.9%를 점하고 있으며 '96년 산재보험 지급 총액 1조3천5백5십억원중 약 38.3%를 차지하는 5천2백여억원에 달하고 건설업은 전년동기에 비해 재해자(389명) 및 사망자(30명) 등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재해로 발생하는 작업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손실, 기업에 주는 유형·무형의 손실,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건설재해의 발생현황과 증가원인을 통해 분석하고, 건설재해의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요시하여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하여 모기업, 협력업체간 협의체를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통하여 구성하여 재해율을 줄이는 감소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국내 건설재해의 발생현황 및 영향

2-1. 발생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재해라는 용어의 뜻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96년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건설업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의 28%(19,785명)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의 30%(789명)에 이르고 있다.

'96년도의 경우 전체 산업재해자 71,548명 중 건설업 재해자수가 19,785명으로 27.9%를 점하고 있으며 '96년 산재보험 지급총액 1조3천5백5십억원 중 약 38.3%를 차지하는 5천2백여

억원에 달하고, 건설업 사망자의 경우 타산업분야의 꾸준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96년 한 해동안 789명이 발생함으로써 전년도 715명에 비해 74명이나 증가(10.3%)하였다.

표 2-1. 재해발생 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2	1994	1996
건설업	재해자수	36,255	24,271	19,785
	사망자수	843	743	789
	재해율(%)	1.90	1.23	0.81
전산업	재해자수	107,435	85,948	71,548
	사망자수	2,429	2,678	2,670
	재해율(%)	1.52	1.18	0.88

표 2-2. 최근 5년간의 건설재해 현황

연도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직접경제 손실(억원)
1992		1,911,378	36,255	848	1.90	3,703
1993		1,816,892	26,129	6,636	1.44	3,355
1994		1,978,629	24,271	743	1.23	3,742
1995		2,240,990	22,542	715	1.01	4,336
1996		2,453,923	19,785	789	0.81	5,200

2-2. 건설재해가 개인 및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최근 3년간 13% 이상의 산재율 감소에 힘입어 '9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산재율 1% 미만」

표 2-3. 산업재해율

연도	'89년도	'90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재 해 율	2.01	1.76	1.30	1.18	0.99
재해자수	134,127	132,893	90,288	85,948	78,034
사망자수	1,724	2,236	2,210	2,678	2,662

(산업재해율 =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을 달성하였으나

우리나라 재해율은 선진국 또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2배 이상 높다. '95년 산재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5조6천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7%('95년도)에 달하며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55,332천일)도 노사분규에 의한 근로손실일수(393천일)의 140여배에 달하고 있어 건설재해가 개인 및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2-2-1. 작업자(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과의 가족이다. 작업자는 자기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좀더 풍족한 생활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가 상처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인생최대의 손실이며 모순이다. 산업재해는 그 가족에게 최대경제적 손실을 줄뿐만 아니라 정신적 타격을 가져오게 한다.

3-2-2.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재해비용

기업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재해비용이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기는 손실비용을 재해비용이라 한다. 하인리히에 의해 계산된 사고시 지불되는 직·간접비용의 비율은 1:4이다(직접비용 5천2백억원, 간접비용 2조 8백억원).

2) 산업재해 기업에 유형, 무형의 손실을 준다.

그중 하나가 산업재해의 보험료이다. 산업재해가 적어서 보상비 지급이 늦어지면 그 감소에 따라 보험료도 인하되지만 반면에 재해의 발생

이 많아지면 소요되는 보상비가 증대되며 보험률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증가, 공사량의 감소, 나아가 기업의 이윤잠식을 가져온다.

3) 재해와 노동력

재해발생에 따라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 ① 경험있는 노동력 상실
- ② 모집경비 및 임금인상
- ③ 교육훈련 등 여분의 경비와 시간소요
- ④ 이직자의 증가에 따른 상기 ②,③항의 악순환 계속
- ⑤ 불안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 ⑥ 상사에 대한 불신감 증대
- ⑦ 인간관계가 나빠짐 등을 들 수 있다.

4) 재해와 기업의 평가

산업재해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등 재해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민감하다. 이 경향은 국민의 인명존중의 관념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다.

5) 안전과 생산기술

생산기술이란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에너지 통제에 실패는 산업재해로 연결되며, 따라서 정확한 기술의 진보와 기능의 연

표 2-4. 건설재해율

구 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재해자수	42,302	36,255	26,129	24,271	22,542
사망자수	801	843	636	743	715
*재해율	1.61	1.90	1.44	1.23	1.01
*강도율	2.10	3.29	3.01	3.02	3.19

* 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 강도율 = $\frac{\text{근로손실일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

마는 기업발전의 조건이 되며 이러한 환경이 산업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6)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실

재해로 인한 증대한 손실의 하나는 마음의 피로, 즉 정신적인 부담이다. 누근든지 재해 발생시는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

2-2-3.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나 소속회사에 물심양면의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사회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건설재해 중 「재래형 반복재해」라 일컫는 추락·낙하·붕괴 등 고질적인 건설재해로 말미암아 재해강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2.10%이던 강도율이 '95년도에는 3.19%로 증가하고 있다.

또 건설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금지급도 평균 임금의 상승과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91년도에 약 2,567억원이던 산재보험액이 '95년도에는 4,336억원으로 4년만에 2배 가량 증가되었다.

표 2-5. 산재보험액

(단위: 백만원)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256,644	370,271	335,540	374,230	433,595
(701,514)	(931,564)	(872,531)	(998,580)	(1,133,577)
36.6%	39.7%	38.5%	37.5%	38.36%

()는 전체 산재보험액

이에 따라 국민세금 부담증가, 국민생활부담, 정신적 부담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국민세금 부담증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보상경비가

증대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환원하면 사회 보상경비의 한계로 피해자의 사회보상은 충분하지 않다.

2) 국민생활 부담

재해때문에 제품비나 공사비가 높아져 국민생활에 부담이 커진다.

3) 일상생활 지장

어떤 종류의 재해는 교통두절, 정전,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의 사업 수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4) 국민의 정신적 부담

재해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에게 정신적 부담을 준다.

3. 건설재해 증가원인

3-1. 건설물량 증가

최근 5년간의 건설사망재해 추이를 보면 건설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재해자가 역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건설사망재해 증가원인 중 건설물량의 증가를 살펴보면 신공항,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공공부분의 건설물량 증가와 건설근로자수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표3-1) 이로 인하여 건설기능인력의 이직현상 심화와 함께 기능인력 양

표 3-1. '95~'96 건설사망재해 및 건설물량 비교

(단위 : 명, 억원)

구분	'95	'96	증가(율)
사망자수	715	789	74(10.34%)
계약금액	576,063	685,300	109,237(18.96%)

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령자와 함께 여성 및 미숙련 근로자가 대거 투입되어 건설사망재해가 증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3-2. 건설현장 자율안전관리풍토 미흡

수주경쟁 격화에 따른 출혈수주 및 주택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사업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

3-3. 추락 등 재래형 반복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대책 소홀

추락·낙하·붕괴 등 재래형 반복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건설현장이 비계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추락재해 절대건수 증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 절대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96년도 추락재해가 236건으로 전년대비 25건 증가했다.

② 플랜트 현장 재해 급증

표 3-2. 발생형태별 재해자현황

(단위 : 명)

발생형태	일반 재해		사망 재해	
	재해자수	%	재해자수	%
계	1,040	100	439	100
추락	573	55.10	251	57.18
감전	56	5.38	40	9.11
낙하·비래	65	6.25	32	7.29
붕괴·도괴	55	4.23	28	6.38
협착	118	11.35	23	5.24
전도외14종	184	17.69	65	14.80

플랜트 현장에서의 추락재해가 최근 들어 급증 추세에 있으며 '96년도 플랜트 현장 사망재해는 95건(18.6%)으로 전년대비 29건 증가했다.

3-4. 과열수주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관리능력 부족

정부의 건설시장 개방화와 경쟁자유화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 사이 국내 건설업 면허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비해 수주경쟁의 척도가 되는 공사 발주건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감함으로써 업체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업체의 수익저하로 인하여 건설업 경영주가 안전활동에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제한된 국내 기술인력 보유현황에서 대량의 건설업 면허의 발급허용은 후발업체가 제반 건설관리능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후발업체가 주로 담당하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5. 하청업체 안전관리 미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원·하청업체간 안전관리의 책임한계가 규정되어 있고 원청업체에서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지원, 현장 안전관리지도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원·하청간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자율

표 3-3. 공사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20억원 미만	20~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억 이상
510 (100%)	193 (38.8%)	37 (7.3%)	44 (8.6%)	236 (37.5%)

안전관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원·하청업체간 원활한 안전관리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96년도의 경우 건설사망재해의 47%가 소규모 영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3-6. 법 준수 풍토 미흡

대부분의 건설재해가 안전난간 설치나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과 같은 기본적 안전대책마저 준수치 않고 소홀히 하여 발생하고 있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원칙에 철저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조성을 위한 의식수준이 이롭다.

4. 개선방안

4-1.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96년 도급기준 1백대 건설사의 재해율 조사 결과 재해예방위원회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구축사업장(7개사)이 재해율 낮은 순위 30대 기업에 모두 포함되어 사업장 자율안전체제 구축이 매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위기감, 출혈수주 및 미분양 아파트 속출 등에 의한 채산성 악화, 정부의 규제완화시책과 업계의 자율안전관리 분위기 이완등으로 기본적 안전대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 기준 협력업체 재해예방위원회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구축사업장은 1백대 기업 중 7개사에 불과, 7%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공사 시공을 하도급 형태로 전환코자 하는 과정에서 소속직원들은 안전관리 등 시공현장 일선에서의 활동은 자기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를 수행할 하청업체인 영세 소규모 건설업체는 이들 업무를 수용할 만한 의식이나 관리능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가 확실한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하고 업무의 공백상태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기업 협력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사업장으로 재해율이 현저히 감소되는 사업장은 각종 정부지원 및 규제에서 혜택을 주어 법(제도)이 기술과 교육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고 기술과 교육이 바탕이 된 법, 제도의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4-1-1. 건설업체 재해를 발표

해당업체별로 전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산정하여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신인도 항목의 가점과 감점(±5점)을 부여하고 불량업체는 정부포상금지 및 1년간 지도·감독을 강화한 결과 재해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업체의 경우 재해율은 더욱 많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 4년간 재해를 발표에 따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건설업	'92년	'94년	'95년
재해자수	36,255명 → 24,271 → 19,785		
100대업체	16,094(명) → 6,743 → 4,507		
재해자수	(44.4%) (27.8%) (22.8%)		
(구성비)			

4-2. 협력업체 안전관리

건설재해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안전관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첩경으로서, 협력업체의 중점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원청은 자율관리체제로, 협력업체는 적극관리대상업체로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예방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1) 협력업체 안전관리체계의 정립

‘안전은 곧 회사의 이익이다’ 라는 경영층의 인식 필요성과 협력업체 경영주의 안전의식 및 확고한 목표 정립이 절대로 필요하며 안전조직 체계 및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다.

작업중지, 시설사용중지 명령권 부여, 안전활동의 상벌제를 실질적용하기 위하여는 당근과 채찍, 인센티브, 포상제도, 벌칙적용의 방법 등이 동원될 수 있으며 안전생활화 유도(정리정돈, 안전활동)을 통한 동일 작업장내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전문건설업체별 상호협력 조치와 함께 실직적인 안전체계의 CYCLE 운용이 되어야 한다.

2) 물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설비, 사용기자재, 가설재 등의 인증제, 점검, 검사제 적용을 하기 위한 성능의 적절성, 검사, 안전성 확보 및 예방보전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별 작업안전표준 제정 준수 및 MY AREA제 그리고 안전보호구, 안전표지, 안전위험지역을 보정하고 노사합동점검, 순찰의 실질화 등을 통하여 물적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 현장안전활동 실질실시

협력회사별 종합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굴 조치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기계, 설비의 점검·보수·개선 및 안전을 위한 작업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긴급작업, 돌판작업, 야간작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T.B.M 위험예지 안전관리기법

적용과 위험작업, 적정작업자 배치, 연락 신호체계를 통한 원청사 및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안전활동에 대한 실질 실시를 하여야 한다.

4) 원청과의 공조체계 강화

실질적 TOTAL 안전관리체계를 위한 안전위원회 실무협의회의 조화가 필요하며 자율안전관리 활성화 및 주요공정 단계별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P.S.H 적용 / FIMEA 적용이 필요하다. 안전목표의 점량적 평가는 안전교육의 입체화 및 현장 모의실험, 체험교육, 표준안전작업지침 생활화, 태도교육, 의식구조의 건전화, 안전관리비의 실질분배적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원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5)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기법 전수

도급순위 500대 기업 재해율 조사시 나타난 산재예방 우수업체의 협력업체 안전관리기법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전 건설업체에 전파, 실제로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1/2 이하인 산재예방우수업체를 파악한 결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평가하여 공사 수주시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6) 상기와 같이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사전안전성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원·하청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안전CYCLE 생활화를 통한 의식구조의 건전화, 협력의지, ALL LEVEL ALL SITE를 적용하여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투자 / 작업자의식 / 사회적 지원을 꾀할 수 있다.

4-3. 근원적인 건설안전 추진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강화

건설현장 측면에서 보면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공사과정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한 계획은 심사는 절차를 통해 검증기회가 있으며 공사진행도중에 위험공정에서의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위험요인의 제거, 개선계획의 수립, 공법의 변경 등에 따라 수립계획의 적정성 여부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2) 공사착공시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전시설을 포함한 가시설이 설계도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공자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어 안전시설 측면에서도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불량한 상태이다. 따라서 추락재해의 원인이 되는 가설구조물은 안전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재해를 줄여야 한다.

3)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

건설현장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용건설 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중·소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공중별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향후 대책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둔 최고경영자의 철학과 「안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 블록화, 지구

춘화라는 변화속에 노동기준과 무역조건의 연계(BR), 국제안전인증제(가칭 ISO 18,000) 도입 등 안전이 새로운 규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다양한 특수성과 현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건설재해 예방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재해 예방의 지속성 유지

그동안 각 관련 부처에서 도입, 실시해왔던 제반 제도 및 정책은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선진외국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훌륭한 제도 및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기존의 어떤 제도나 정책이 정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업계로 하여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감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떤 제도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소 그 효과가 늦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웃 일본에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좋은 사례라 하겠다.

2)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

현재 제반규정에 의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 사업장의 안전은 최일선에서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공정 담당 기술자의 역할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대학의 교과목에서 안전관리 과목을 포함시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건설기술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기술자 보수교육 등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재해예방 기관의 적극적 활용

건설사망재해의 47%가 소규모 영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소규모공사에서 발생하므로 현장 안전관리지도 등을 통해 정책수립과 지위, 감독 등 근본적인 업무는 정부 부처 관계직원이 수행하고 재해조사 및 통계관리와 교환 중·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업무 및 기술자문, 사업장 진단 등의 업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해예방단체에서 수행하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기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가을 어느날

김황기 화백의 화폭에는
가을이 한창이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적삼 아래 둥그런 찢꼭지를 보인
아낙들이
잘 익어 누런 햇덩이들을 따서 담는다.

암호처럼 숨긴 과수원 길을
술렁이며 걸어가는
얼굴 불쾌해진
지아비들.

노동처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다고
꽃노래 소리 가득히 흐른다.

그 노래 소리 몇 소절은
바람이 멍에처럼 얹혀 있는 언덕위로
사라진다.

그곳에도 누군가 시는지
가을 하늘이 저문다.
16호로 축소된 가을이
간혀서 저문다.

노 향 립